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금의 용도에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추가〉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27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관계기관 의견	3
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
나. 기획재정부	3
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4
IV. 검토의견	5
1. 논의배경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2209124호)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기금 설치	5
2.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11
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	12
4. 검토의견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3. 19.
3. 회 부 일 : 2025.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

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관계기관 의견

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농어촌상생기금에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을 규정하는 것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기금 설치, 기금의 재원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입장임.

또한, 상생협력기금은 주로 지정기금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¹⁾, 빈집정비에 대해서만 전출 근거가 마련될 경우 빈집정비 이외 분야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생길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기획재정부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은 i)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신설 요건(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등)에 부합하지 않고 ii) 기존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iii)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1)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현황) 매년 1천억원 조성 목표의 30% 수준(연평균 330억 수준)으로 모금되고 있으며, 주로 지정기금 형태(출연기관이 용도·사업 등 지정(모금액의 98% 수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한편, 빈집 정비를 위해 기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 사업이 既추진 중²⁾이므로 별도 기금 설치 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산책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생략)

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빈집정비기금으로 전출 가능한 비지정기금이 정기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확보가 전제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임.

한편, 현재 빈집 정비를 위해 투입되는 상생협력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출금이 특정분야에 지정되어 운영될 경우 실효성 있는 기금 활용을 위해 확대 추진하고 있는 본부기획사업과 공모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 (농식품부)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빈집은행 활성화, 빈집재생지원, 15.4억원),
(행안부) 빈집정비사업(100억원), 그 밖에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빈집 철거 등 지원

IV. 검토의견

1. 논의배경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제2209124호)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기금 설치

농어촌 지역은 수도권·대도시 중심 경제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화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22.1%였던 농촌지역 고령화율은 2023년 현재 25.7%로 증가하였음.

이는 도시지역의 고령화율이 2019년 13.5%, 2023년 16.9%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농촌 및 도시지역 고령화율 변화(65세 이상)】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촌(읍면)	22.1	23.0	24.0	25.0	25.7
도시지역	13.5	14.4	15.2	16.0	16.9
국가 전체	15.1	16.0	16.8	17.7	18.6

*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5.2.10. 제출)

한편,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촌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1975년 1,791만명 수준이던 농촌인구는 2023년 기준 967만명 수준까지 감소하였고,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발간한 「2023 농업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943만, 2040년 900만, 2050년에 이르면 84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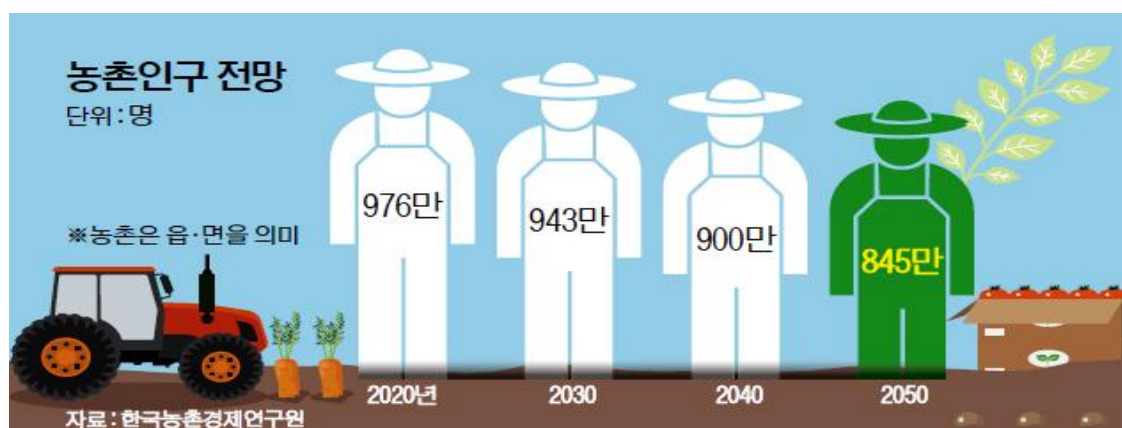
【농촌인구 변화 추이】

(단위: 읍·면 기준, 천명, %)

'75	'00	'05	'10	'15	'20	'21	'22	'23
17,910	9,381	8,764	8,758	9,392	9,764	9,718	9,605	9,66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25.4.11 제출)

【농촌인구 전망】



※자료: 「2023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인구 감소는 농촌 빈집의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바, 2020년 61,317개 동이던 농촌 빈집은 2023년 65,019개 동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전국 농촌빈집 현황('19~'23)】

(단위: 동)

시도	'19	'20	'21	'22	'23
부 산	-	14	30	21	32
대 구	99	26	530	528	1,108
인 천	958	616	587	470	522
광 주	-	-	-	-	-
대 전	-	5	-	17	-
울 산	291	804	821	743	528
세 종	331	372	371	647	653
경 기	2,233	2,694	2,448	2,481	2,410
강 원	3,450	3,182	3,380	3,886	4,363
충 북	2,441	2,129	2,030	3,466	3,135
충 남	6,447	2,948	3,986	3,901	4,771
전 북	10,633	8,613	9,434	9,904	10,092
전 남	12,988	14,164	17,648	16,310	15,138
경 북	11,765	12,824	13,774	13,886	12,043
경 남	9,647	7,393	9,416	9,106	9,589
제 주	34	163	748	658	635
합 계	61,317	55,947	65,203	66,024	65,01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25.4.11 제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농촌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고, 신속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방치된 농촌 빈집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25.4.11. 제출)

다만,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0년에 해당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으로써, 농촌빈집 정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유희시설활용지역활성화사업’,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사업’,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사업’ 등의 일환으로, 노후주택 개량 및 빈집 철거 등이 일부 지원되고 있음.

【빈집정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자율) (4180-370)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빈집정비 등을 포함,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88,500	91,500	108,000	104,121	104,501
" (세종) (4180-301)	-		-	-	-	879	499
농촌유희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자율) (4160-302)	-	유희시설(빈집, 폐창고 등)을 활 용하기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사 업비 지원	2,345	1,800	1,300	2,770	1,555
" (세종) (4160-302)	-		-	-	-	90	360
" (제주) (4160-300)	-		-	-	-	45	180
농촌공간계획 및재생지원 (4160-431)	농촌공간정비	농촌의 난개발 요소 정비 및 정 비 부지를 활용한 재생사업 지원 (빈집정비 포함)	2,500	32,000	73,500	68,000	104,450
	농촌마을 유희자원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지자체별 빈집 상세 조사 지원(빈집주소, 입지, 유형, 상태 등)	-	-	-	2,500	-
농촌생활 인구유입지원 (4160-448)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민간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 집 정보 고도화를 통한 매매, 재 생 등 빈집 활용 유도	-	-	-	-	1,350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	밀집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단· 장기 체류주택, 공동이용시설 등 으로 활용 등 지원	-	-	-	-	1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25.4.11 제출)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가구별 단위의 철거 위주로
추진되는 농촌빈집 정비실적은 매년 7,500호 전후에 머물러 한계
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농촌빈집 정비실적】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정비실적(동)	7,891	7,873	7,551	7,739	7,88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25.4.11 제출)

이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 9124호, 윤준병의원안)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 되는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 하도록 하면서,

그 재원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6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을 규정하려는 것임.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의 재원 및 용도】

재원(제26조제1항)	용도(제27조)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제8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6항 제7호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빈집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4. 특정빈집 철거등 조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이 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발췌

2.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26조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의 재원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6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을 포함하는 것과 연계하여,

현행법 제18조의2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 ⑤ (생략)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
<u>7.</u> (생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

현행법상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우리나라의 농어촌과 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중심의 기금임.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2015 여야정 합의'('15. 11. 30.)에 따라 무역이득공유제³⁾의 대안으로 2017년 3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정부외의 자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조성되고 있음.

【한·중FTA 여야정 합의문 관련내용】

1.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동 기금은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동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한다. 만일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25.4.11 제출)

3)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수혜를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개요 】

- (추진배경) 한·중 FTA 비준 동의 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여야 정합의('15.11.30)에 의해 도입('17.3.30)
- (조성목표)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매년 1천억원 조성, 10년간 1조원 조성 목표
- (조성재원 및 용도)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용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u>정주 여건</u> 의 개선, <u>경관 개선</u>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 (운영조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17.3.30. 출범)
- (인센티브) 세제혜택(법인세액 공제 등), 동반성장지수·평가 반영, 홍보
- (조성현황) '17년~'24.10월 현재까지 상생기금 출연액 중 공기업·공공기관의 출연액은 58.8%, 민간기업의 출연액은 40.9% 차지
- (기금사업 집행현황): 957개 사업, 2,191.7억원
 - 농어촌 교육·장학사업(98개 사업, 11,073백만원)
 -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220개 사업, 38,640,백만원)
 -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429개 사업, 108,244백만원)
 -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198개 사업, 43,416백만원)
 - 농협 발행 상품권 사업(9개 사업, 17,341백만원)
 - 홍보·공통사업 운용관리(3개 사업, 452백만원)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31. 기준)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1천억원을 10년간 조성하여 총 1조원을 조성
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7년 3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립 이후 2024년 12월까지 조성된
출연 현황은 2,642억원으로, 8년간(2017~2024) 총 조성목표액 대비 약
26%가 조성되었음.

【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개 / '24.12.31.기준)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25,000 (98.9%)	2	300,900 (1.0%)	68	38,600 (0.1%)	30,964,500 (100.0%)
2018	30	17,930,304 (77.4%)	9	5,215,000 (22.5%)	27	13,500 (0.1%)	23,158,804 (100.0%)
2019	43	17,543,314 (77.6%)	26	5,045,190 (22.3%)	9	5,000 (0.1%)	22,593,504 (100.0%)
2020	65	20,434,868 (54.4%)	76	17,053,057 (45.3%)	16	107,411 (0.3%)	37,595,336 (100.0%)
2021	94	25,738,842 (56.5%)	70	19,683,670 (43.2%)	5	102,607 (0.3%)	45,525,119 (100.0%)
2022	101	15,945,206 (45.0%)	111	19,245,226 (54.3%)	7	226,200 (0.6%)	35,416,632 (100.0%)
2023	117	13,387,204 (43.9%)	103	16,941,254 (55.6%)	5	166,717 (0.5%)	30,495,175 (100.0%)
2024	116	13,626,644 (39.3%)	88	20,944,719 (60.4%)	9	81,500 (0.2%)	34,652,863 (100.0%)
다년협약 잔여분	1	70,000 (1.8%)	2	3,780,000 (98.2%)	-	- (0.0%)	3,850,000 (100.0%)
총 계 (중복제외)	581 (133)	155,301,382	487 (220)	108,209,016	146 (134)	741,535	264,251,933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4.4.11 제출)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업으로는 농어촌지역 개발 및 활성화 관련 429개 사업에 1,082억 원을 집행(49.4%)하고,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 관련 198개 사업에 434억 원을 집행(19.8%)하는 등 누적 957개 사업에 2,191억 원을 집행하였음.

【 연도별 사업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개 / '24.12.31.기준)

구 분	년 도	교육·장학 (제1호)	복지증진 (제2호)	지역개발 (제3호)	공동협력 (제4호)	상품권 (제5호)	운용·관리 (제6호)	합 계
지 원 금 액	2017	500	192	344	501	-	-	1,537
	2018	1,237	4,003	16,688	8,459	3	-	30,389
	2019	1,292	2,921	10,014	3,360	359	-	17,946
	2020	384	5,187	14,805	5,325	1,811	-	27,512
	2021	1,644	6,227	12,621	4,646	3,807	-	28,945
	2022	554	5,464	15,440	5,661	4,211	-	31,330
	2023	4,265	6,027	15,375	8,562	3,252	20	37,501
	2024	1,197	8,619	22,957	6,902	3,898	432	44,005
	합 계	11,073 (5.1%)	38,640 (17.6%)	108,244 (49.4%)	43,416 (19.8%)	17,341 (7.9%)	452 (0.2%)	219,166 (100.0%)
지 원 과 제	2017	2	2	3	2	-	-	9
	2018	8	11	29	19	1	-	68
	2019	12	21	36	16	2	-	87
	2020	10	28	58	28	1	-	125
	2021	15	31	76	33	2	-	157
	2022	13	30	65	32	1	-	141
	2023	22	46	63	41	1	1	174
	2024	16	51	99	27	1	2	196
	합 계	98 (10.2%)	220 (23.0%)	429 (44.8%)	198 (20.7%)	9 (0.9%)	3 (0.3%)	957 (100.0%)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4.4.11 제출)

4. 검토의견

1) 기금 간 목적 연계성

기금은 일반적으로 특정사업이나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편성·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나친 칸막이식 재정운용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13조⁴⁾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의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⁵⁾,

빈집문제는 현재 농어촌이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적간 연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단서 생략)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특히 현행법 제18조의2제6항제3호⁶⁾는 따른 농어촌상생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보임.

2) 농어촌 빈집정비기금 재원확보 필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 정비기금은 재원 조성 위한 별도의 부담금이나 수입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바⁷⁾, 재원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민간·공공의 자발적 출연 등으로 매년 일정한 재원이 확보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아, 농어촌빈집정비기금의 재정적 기반을 보완하고 기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7) 【타 기금 및 재원 사례】

기 금	주요 재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 법정부담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광고 사업 수입금,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한강수계기금	물이용부담금

3) 농어촌상생기금 재원 부족 등 고려 필요

다만, 현재 농어촌상생기금은 매년 조성목표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3%정도만이 조성되고 있어, 농어촌상생기금 사업을 통한 농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다년	계
목표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7,000
조성액	309.6	231.6	226.0	375.9	455.3	354.2	304.9	346.5	38.5	2,642.5
비율	30.9%	23.1%	22.6%	37.6%	45.5%	35.4%	30.5%	34.6	-	33.0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5.4.11. 제출)

또한, 현재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이 지정기금 형태로 조성되어 자율추진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출연기업이 지정한 용도 및 사업에 한정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 빈집정비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기금이 정기적으로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 유형】

구분	본부기획사업	자율추진사업	공모사업
내용	출연기업이 출연한 지정기금 및 비지정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본부가 사회공헌, 상생협력 및 ESG 사업 등 농어촌 농어민 지원을 위해 기획 운영하는 사업	<u>출연기업이 용도 및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한</u> 지정기금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	민간(농어업인단체, 사회복지기관, 비정부기구 등이 농어촌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출연기업이 이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사업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지원사업 유형별 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조상액		309.6	231.6	226.0	375.9	455.3	354.2	304.9	346.5	2,604*
지출액	본부기획사업	-	3.0	40.5	64.0	82.2	130.1	141.0	174.5	635.3
	자율추진사업	15.4	300.9	138.9	211.2	207.3	183.1	234.0	250.6	1,541.4
	공모사업	-	-	-	-	-	-	-	15.0	15.0
	계	15.4	303.9	179.4	275.2	289.5	313.2	375	440.1	2,191.7

* 다년협약 금액(38.5억원) 제외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4)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

전출금이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의미하고, 농어촌상생기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민간 성격의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재원을 다른 기금으로 무상제공 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금 출연 주체인 민간 기업 또는 단체는 해당 기금이 원래의 취지인
도농 간 상생협력 사업에 쓰일 것이라는 기대 하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이 있고, 이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출연 동기를 저하시키거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빈집정비기금의 전입 재원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을 활
용하고자 할 경우, 그 정당성과 기금 본래 목적과의 연관성에 대한 충
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